

<p>은평권역 공영차고기본운영계획안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px; margin-bottom: 10px;"> <tr>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586</td></tr> <tr><td style="padding: 2px;">번호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</td></tr> </table> <p>2000년 5월 일 교통위원회</p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4월 12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</p> <p>나. 회부일자 : 2000년 4월 17일</p> <p>다. 상정일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(2000년 5월 1일 상정 · 의결)</li> </ul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</p> <p>(제안설명 : 교통관리실장 차동득)</p> <p>가. 제안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내버스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10개 권역의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중 은평권역 공영차고지가 6월 말 완공 예정임에 따라 은평권역 차고지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· 관리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코자 하는 것임.</li> </ul> <p>나. 주요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· 관리하기 위하여 은평권역 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업체 등에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취소, 사용료의 부과 · 징수, 행위제한, 시설물의 관리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주차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코자 함.</li> </ul> <p>3.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</p> <p>(전문위원 : 김태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은평권역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인 “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”이 지난 회기에 의회에 접수 · 계류중에 있으며</li> <li>○ 새로 접수된 계획안 근거규정으로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 제1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나, 본조례 규정은 대행사업에 관한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</li> </ul> <p>(제63조)에서 “공사 ·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” “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을 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처럼 대행사업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얻거나, “시장이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”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과 맞지 않으며</li> <li>○ 서울시 산하의 여타 공사 · 공단 설치조례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며 본 계획안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함.</li> <li>○ 한편, 시설관리공단의 담당부서에서도 본조례 제18조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, 조례개정안의 발의권이 없어서 그 동안 개정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음.</li> </ul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생략</li> </ul> <p>5. 토론요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없음</li> </ul> <p>6. 소위원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미구성</li> </ul> <p>7. 심사결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원안가결</li> </ul> <p>8. 소수의견의 요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없음</li> </ul> <p>9. 기타 필요한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없음</li> </ul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은평권역 공영차고 기본운영계획</b></p> <p>우리시 대중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10개 권역의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중 은평권역의 공영차고지 조성공사가 6월 말 완공예정임에 따라 동 차고지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은평권역 공영차고 기본 운영계획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</p>	의안	586	번호	
의안	586			
번호				